

# 1. 지방세란 무엇인가요?

## 가 지방세란?

지방세는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교육·보건위생 환경조성과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과 시와 자치구의 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대해 그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입니다.

## 나 지방세는 이렇게 구성 됩니다.

■ 징수주체에 따른 분류 : 광역시세, 자치구세로 구분

■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확충 등)

■ 지방세 분류

광역시세		자치구세
<b>보통세</b>	<b>목적세</b>	<b>보통세</b>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재산분)
담배소비세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2.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연월	지방세 납부 일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31일까지)</li> <li>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16일 ~ 31일)</li> <li>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분) 신고납부</li> <li>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전년도 10월 ~ 12월분)</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 분할납부(31일까지)</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분) 신고납부</li> <li>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1월 ~ 3월분)</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소득세 확정시 지방소득세(개인분) 신고납부(31일까지)</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부(16일 ~ 30일)</li> <li>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 분할납부(30일까지)</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세 주택분(1/2), 건축물분(16일 ~ 31일)</li> <li>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분) 신고납부</li> <li>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31일까지)</li> <li>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4월 ~ 6월분)</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세(균등분) 납부(16일 ~ 31일)</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신고납부 / 분할납부(30일까지)</li> <li>재산세 주택분(1/2), 토지분(16일 ~ 30일)</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분) 신고납부</li> <li>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납부(7월 ~ 9월분)</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부(16일 ~ 31일)</li> </ul>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li> <li>- 레저세 : 10일까지</li> <li>-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li> <li>- 지방소비세 : 25일까지</li> <li>-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li> <li>- 자동차세(주행분) : 말일까지</li> <li>-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 말일까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li> <li>-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등록 전까지</li> <li>-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종 인·허가시</li> <li>- 지방소득세(개인분) 신고납부</li> <li>- 중고자동차의 자동차세</li> <li>- 일할계산 수시부과 / 신고납부</li> <li>- 신고납부 세목 미납분 부과</li> <li>-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부과</li> </ul> </li> </ul>

### 3. 지방세 세목별 안내

#### 1) 광역시세

광주광역시의 주된 세입으로서 취득세 등 9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 세목은 5개 자치구에서 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취득세

##### 1) 부동산 취득세

□ **납세의무자** :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시설물

□ **취득의 시기**

- 매매 등 유상 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증여 등 무상 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신·중·개축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과세표준**

- 개인 간 거래 :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토지주택은 공시가격) 중 큰 금액
- 공매, 판결문·법원장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등: 사실상 취득가격

□ **신고납부기한**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단,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세 율

구 분		세 율
주택 유상취득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0%
	9억원 초과	3.0%
주택 외 유상취득	농 지	3.0%
	농지 외	4.0%
증 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상 속	농 지	2.3%
	농지 외	2.8%
원 시 취 득		2.8%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 ※ 취득세 관련 부가세

##### · 지방교육세

- 주택 유상취득 :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그 외 :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전 등록세액)의 20%

#####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 (중전 등록세 해당 부분 제외)
- 강면한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의 20%

##### 2) 차량 등 취득세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 **취득의 시기**

- 매매 등 유상 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증여 등 무상 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과세표준

- 개인 간 거래 :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격

□ 신고납부기한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세 율

구 분		세 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7.0%
	경자동차	4.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
	영업용	4.0%
	경자동차	4.0%
기타 자동차(자동차세과세대상)		2.0%
기계장비	기계장비	3.0%
	등록대상 아닌 기계장비	2.0%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회원권		2.0%

TIP

Q. 취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의 20%(부정 무신고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분의 10%(부정 과소신고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나 동 차 세

□ 납세의무자

납기(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 세 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1,000cc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

· 승합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 형 전 세 버 스	70,000원	-
소 형 전 세 버 스	50,000원	-
대 형 일 반 버 스	42,000원	115,000원
소 형 일 반 버 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적 재 정 량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분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 납 기

· 정 기 분

제1기분(6월) : 6월 16일 ~ 6월 30일

제2기분(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분할납부 :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세액을 1/4금액으로 3, 6, 9, 12월에 분납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다**     [균등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광주광역시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세 율

- 개 인 : 10,000원
- 개인사업자 : 75,000원
- 법 인

자 본 금	종업원 수	세 액
100억원 초과	100명 초과	750,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명 초과	525,000원
50억원 초과	100명 이하	3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명 초과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명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명 초과	
그 밖의 법인		75,000원

(주민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 부가)

□ 납 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라**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법인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세 율

- 개 인 분 : 소득세 과세표준 × 0.6% ~ 3.8%[2016년까지 국세의 부가세(결정세액의 10%)형태로 운영]
- 법 인 분 : 법인세 과세표준 × 1% ~ 2.2%(‘15년부터 독립세 과세체계로 변경)
-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금액 × 10%(‘15년부터 법인도 특별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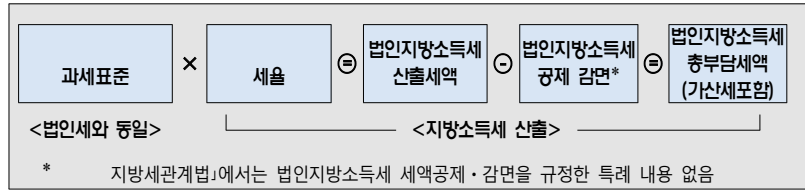
□ 납 기

- 개 인 분 :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법 인 분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개요

-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소득 부분)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과세체계로 변경**

\*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 ‘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부칙 52)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총칙

○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법 §86의①)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법법§2①)
-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됨
-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에 1%(미 등기의 경우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내국법인이 계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

※ 법인구분별 과세소득의 범위(법인세법 §3)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법인	영리법인	· 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세○	과세X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	과세○	과세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과세X

※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법법 §2③),  
 ②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법법 §1(4))에 해당됨

○ 사업연도

- (개념)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으로 그 기간은 1년 초과 불가  
 (지방세법 §85 ① 11호 및 법인세법 §6)

구 분		사업연도
법령·정관 등에서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		· 법령·정관등에서 규정한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 신고 ○	· 신고한 사업연도
	사업연도 신고 X	· 매년 1.1 ~ 12.31

- (사업연도의 변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 §7)
-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에게 해산·합병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구분 (법인세법 §8)

○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지방세법 §89 참조)

납세지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li> <li>· 예외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li> </ul>
외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li> <li>· 예외 :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li> </ul>

사업장 (지방세법 §85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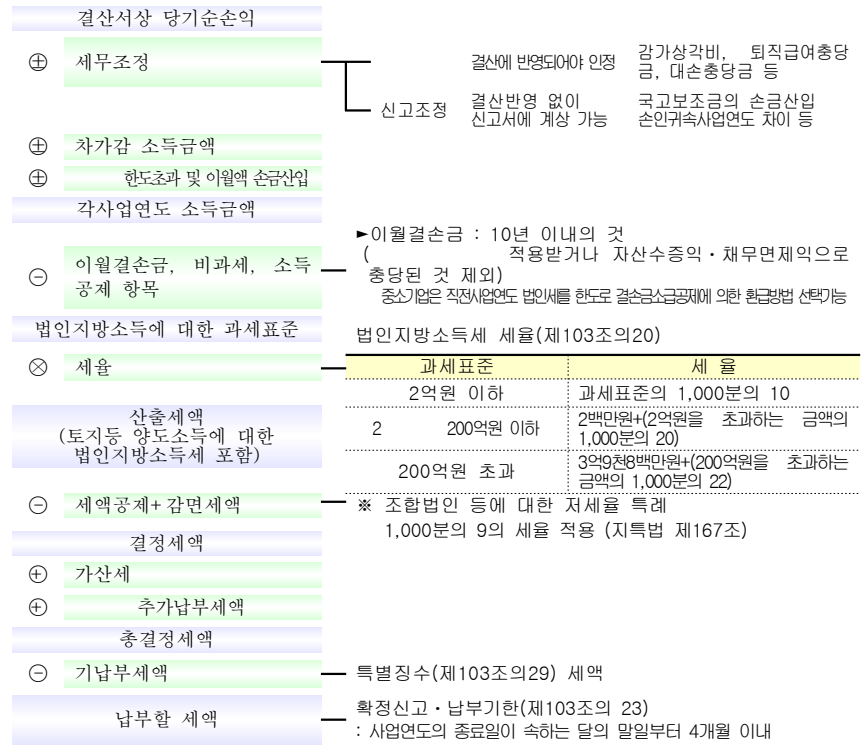
10.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기본통칙 85-3 인적설비, 물적설비】

1. 「법인세법」 제85조제5호의 「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85조제5호의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그 사업장 소재지(지방세법시행령 §87① 참조)

❖ 【사례】 원천징수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행안부 지방세운영-52, 2011.1.6.)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사에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 B사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 B사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지 또한 법인세의 납세지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라 할 것임

❖ 【사례】 본점에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행자부 세정 13430-99, 2000.1.24.)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물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점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읍·면임



❖ 세무조정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함

- (결산조정)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절차

**2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방세법 §103의19 )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세율**

· 각 사업연도의 소득(지법 §103의20①)

과세표준	세율	비고
2억 이하	1%	세율의 10%
2억 초과	2백만원 + (2억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 초과	3 9천8백만원 + (200억 초과하는 금액의 22%)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가능(지법§103의20②) (2017.1.1 이후부터 적용,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1 단서)

◆ **지방세법 제103조의2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세법에 따른 계산방법 (지법 §103의20①)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방법 (신고서작성 등 실무에서 활용)		
<b>&lt;계산방식&gt;</b> 전단계까지의 누진세액, 전단계까지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해당 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		<b>&lt;계산방식&gt;</b>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b>&lt;세율표&gt;</b>		<b>&lt;세율표&gt;</b>		
<b>과세표준</b>	<b>세율</b>	<b>과세표준</b>	<b>세율</b>	<b>누진공제액</b>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이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200억원 초과	2.2%	4,200만원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
-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법인세의 경우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법법 §60 ⑤)법인지방소득세는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에 유의할 것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국세와 동일하게 적용)

○ **수정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지방세법 §103의24①)
  - \*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를 경정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납세자는 수정신고 가능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없음 (지방세법 §103의24②,③ 참조)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에 따른 경정등의 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은 다음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지방세법 §103의24④ 참조)

○ **가산세 요약**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출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차이가 발생.
 

(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등 명세서, 계산서합계표,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가산세 산출방법, 가산세 감면, 가산세 한도, 초과환급세액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

※ 국세 과소신고 가산세 비교 (지방세기본법 §53의3 vs 국세기본법 §47의3)

구분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일반 무신고	× 20%	MAX (①,②) *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부정행위 무신고	산출세액 × 40%	MAX (①,②) * ① 산출세액 × 40% ② 수입금액 × 14/10,000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10%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 - 기납부세액 } × 10%
부정행위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40%	MAX (①,②) * ①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 40% ② 수입금액 × 14/10,000
공제 감면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 그 금액의 40%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동시 적용시 지방소득세는 가산세 동시 적용

## 마

### □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 화력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분 :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는 자

### □ 세 율

- 특정자원분
  - 지하수 : 음용수 1m³당 200원, 온천수 1m³당 100원, 기타 1m³당 2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특정부동산분
  - 건축물 가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0.04 ~ 0.12%)

세 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주유소,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해당세율의 2배 중과
-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해당세율의 3배 중과
-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0분의 2.3

### □ 납 기

- 특정자원분 : 신고납부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

구 분	기 간	납 기
1기분	1월 ~ 3월분	4. 16. ~ 4. 30.
2기분	4월 ~ 6월분	7. 16. ~ 7. 31.
3기분	7월 ~ 9월분	10. 16. ~ 10. 31.
4기분	10월 ~ 12월분	다음해 1. 16. ~ 1. 31.

### · 특정부동산분(재산세와 함께 납부)

- 주 택 : (1기분) 7. 16. ~ 7. 31. (2기분) 9. 16. ~ 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 ~ 7. 31.

## 바 지방교육세

### □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재산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세 율

분	과 세 표 준		표 준 세 율
1	주택유상취득	산출취득세액(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 50%)	20/100
	그 외	산출취득세액(취득세율 - 2%)	20/100
2	등록면허세(등록분)액		20/100
3	레저세액		40/100
4	주민세(균등분)액		25/100
5	재산세(재산분)액		20/100
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30/100
7	담배소비세액		43.99/100

## 2) 자치구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구 자주세입원으로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 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 세 표 준**

- ( +부속토지) :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토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 율**

· **주 택(건물+부속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6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건 축 물**

과 세 대 상	세 율
일반 건축물	0.25%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골 프 장	4%
고급오락장	4%

· 토 지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5 이하	0.2%	2억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기타 토지 : 0.2%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

□ 납 기

- 주 택 : (1기분) 7. 16. ~ 7. 31., (2기분) 9. 16. ~ 9. 30.
- 건 축 물 : 7. 16. ~ 7. 31.
- 토 지 : 9. 16. ~ 9. 30.

《 물건별 재산세 세액산출 예 》

(단위 : 천 원)

물 건	시가 표준액	공정시장 가액비율	과세 표준	세 율	세 액
주 택 (토지와 일괄평가)	200,000 (개별주택가격)	60%	120,000	6천만원의 0.15% 후 + 6만원	150
일 반 건축물 (토지별도)	300,000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	70%	210,000	0.25%	525
토 지 (종합합산)	100,000 (개별공시지가)	70%	70,000	5 0.3% + 10만원	160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 40%~80%,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50%~9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재산세 관련 부가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0.14%
-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토지는 제외)

-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의 0.04% ~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

나

□ 등록분

□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자

□ 과 세 대 상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 과 세 표 준 :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며,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 채권금액

□ 세 율

- 부동산의 저당권·전세권·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등 : 0.2%
-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 0.2%
-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0.4%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0.2%
  - 자산재평가 : 0.1%
  - 본점·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그 밖의 등기 : 40,200원
- 상호 등 등기 : 12,000원 ~ 78,700원
- 저작권 등 등기 : 3,000원 ~ 40,200원
- 특허권·상표·서비스 등 등기 : 7,600원 ~ 18,000원

□ 신고납부

- 등기·등록 신청시 사전에 관할구청에 신고·납부
- 등기신청서 접수 이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면허분

□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은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 율

분	인구 50만 이상 시	기 타 시	군
1 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 2 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 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 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 5 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납 기

- 정기분 : 1월 16일 ~ 1월 31일
- 신고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받음

※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20%), 부정무신고(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10%), 부정과소신고(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0.03%

※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 연도분 등록면허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의 10% 공제)

다

① 재 산 분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납 기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②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수 50인 초과)

□ 납 기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